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‘20.12.8)으로 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)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(법 제24조의2제3항),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(안 제37조의2)

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조 제3항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) ① 법 제24조의2제2

항의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정책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.

1.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서 남북교류협력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·국장

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
1.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
3.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

4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정책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,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⑦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37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) ① 법 제24조의2제2항의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정책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.</u> <u>1.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</u> <u>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서 남북교류협력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·국장</u> <u>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</u> <u>1.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</u> <u>2. 지방자치단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·조</u>		

정이 필요한 사항

3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
에 부치는 사항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
그 의장이 된다.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
출석으로 개의하고, 의결이 필
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정책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
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, 협
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
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
수 있다.

⑦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
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
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
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
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일부 교류총괄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832